

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안 번호	29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·보호·활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기반의 경영환경 조성 및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나.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」에 의거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 '09년도 최초 위탁 후 지속 위탁하여 해당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중임
- 다.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개요

- 위탁사무 :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
- 위탁기간 : '22.1.1. ~ '24.12.31.(3년)
- 위탁방식 : 사무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협약(재계약)
- 소요예산(안) : 2,436백만원('21년 예산안 기준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발명진흥법 제23조
-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5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산업진흥원은 「발명진흥법」 의거 등록된 지식재산센터의 운영기관이며, 시정 이해도가 높아 사업수행에 적합
-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장기간 해당 사업을 수행한 서울산업진흥원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 필요

다. 추진경위

- '09. 1월 : 서울산업진흥원 '서울지식재산센터' 운영기관으로 선정(특허청)
- '09. ~ '12. : 서울산업진흥원과 1년 단위로 위탁협약 체결
- '13. ~ '15. :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(재계약 3년)
- '16. ~ '18. :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(재계약 3년)
- '19. ~ '21. :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(재계약 3년)

라. 주요 위탁사무

- 지식재산권 창출, 보호, 활용지원
- IP스타기업 육성지원
- 지식재산 인프라구축
-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관리
- 기타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발명진흥법」 제23조

제23조(지역지식재산센터)

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·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」 제4조

제4조(시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」 제25조

제25조(사무의 위탁)

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김선영 (☎2133-5229)